

의안번호	제 221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9월 일 (제303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1년 9월 9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1
----------	-----

제출연월일 : 2011년 9월 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국회·정당,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도정 주요시책 입법지원 및 법안 동향관리 등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설치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도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서울사무소”설치 : (안 제56조의2)
- 소관사무의 총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소장을 둠 : (안 제56조의3)
- 국회·정당, 중앙행정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등 소관사무 수행 : (안 제56조의4)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다음에 “제8절 충청북도서울사무소”를 삽입하여,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6조의3(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의4(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3. 국가예산 확보 및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
4. 그 밖에 도정과 관련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사업소</p> <p>&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사업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8절 충청북도서울사무소</u></p> <p><u>제56조의2(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u>②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u></p> <p><u>제56조의3(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p> <p><u>제56조의4(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u></li> <li><u>2.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u></li> <li><u>3. 국가예산 확보 및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u></li> <li><u>4. 그 밖에 도정과 관련된 사항</u></li> </ol>

##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